

G.L.O.W. 운영규정(안)

초안 v0.1 · 2026년 10월 17일 · 정식 채택 전

본 문서는 임원·회원 검토를 위한 초안입니다. 공식 규정으로 의결·시행되지 않았으며, 홈페이지의 현재 권한이나 경상국립대학교의 규정을 자동으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안)은 G.L.O.W.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운영진의 권한과 책임 및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원칙)

G.L.O.W.는 학생 자율 취업동아리로서 취업역량 강화와 상호 협력을 지향한다.

회장은 동아리를 대표하되 모든 운영 권한을 독점하지 않는다.

운영위원회는 회원에게 책임을 지며, 학교의 공식 절차와 지원사업 지침을 우선 준수한다.

제3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프로그램 참여, 운영규정 열람, 건의사항 제출, 임원 임명 이의제기 및 규정에서 정한 회원투표 참여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공정한 심사와 사유 고지, 징계에 대한 소명 및 재심의 기회를 보장받는다.

비공개 건의사항과 인사 관련 이의제기자의 신원은 업무상 필요한 인원에게만 제공한다.

제4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상호 존중하며, 동아리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에 성실히 참여한다.

허위 자료 제출, 타인 개인정보 무단 공개, 예산과 자원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

회원 자격과 활동 기록의 관리는 인사담당자가 맡되, 중요한 제재는 공동 심의를 거친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인사담당자, 어학역량부장 5명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에게 각각 1표를 부여하며 회장은 추가 표나 단독 거부권을 갖지 않는다.

현재 공석인 직책의 권한은 별도 절차에 따라 위임하고, 정족수 미달 안건은 보류한다.

제6조 (일반 의결과 중요 의결)

운영위원회 회의는 5명 중 4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일반 안건은 3명 이상, 임원 해임·회원 제명·중요 규정 개정 등은 4명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이해충돌 당사자는 심의·의결에서 제외하며, 이때 비이해관계자 3명 이상이 참여·찬성해야 한다. 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건을 보류한다.

제7조 (회장의 역할)

회장은 동아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학교·외부기관과의 협의를 총괄한다.

회장은 사업과 임원 후보자를 제안할 수 있으나, 정해진 공동 승인 없이 회원을 제명하거나 운영위원회 의결을 취소할 수 없다.

제8조 (부회장의 역할)

부회장은 프로그램 운영과 일상 사무를 조정하고 회장 부재 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은 예산 현황과 보고서를 열람하고 추가 지원금 요청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단독으로 집행 결재를 완료할 수 없다.

제9조 (총무의 역할)

총무는 예산, 집행기록, 증빙자료 및 결산을 관리한다.

총무는 예산 부족 또는 증빙 미비 시 집행을 보류할 수 있고, 본인 신청 지출을 단독 승인할 수 없다.

제10조 (인사담당자 및 어학역량부장)

인사담당자는 회원 모집, 신청서 1차 심사, 출석·활동 내역 및 인사 안건을 관리한다. 단독 제명 권한은 갖지 않는다.

어학역량부장은 어학 스터디 및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을 담당하고 운영위원회 의결에 참여한다.

제11조 (임원 후보자의 지명과 동의)

임원 후보 지명권은 회장에게 있으며, 지명만으로 직책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후보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예정 직책, 주요 업무, 임명 사유 및 임기 등을 회원에게 공고한다.

임명 예고 기간은 5일로 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2조 (임명 이의제기 및 거부권)

승인된 모든 정회원은 임명 예고에 비공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의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과 후보자 소명 절차를 마련하고 인사 심의를 진행한다.

회장을 제외한 비이해관계 운영위원 중 2명 이상이 최종 반대하면 회장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다.

선의를 이의제기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고의적 허위신고와 괴롭힘은 별도로 심의한다.

제13조 (정회원 공동 이의제기 및 회원투표)

임명 공고일 기준 재적 정회원 20% 이상이 공동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원투표를 진행한다.

회원투표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참여로 성립하며 참여 회원 과반수가 반대하면 임명안은 부결된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부결된 임명안은 회원투표를 통해 되살릴 수 없다.

제14조 (임원 해임 및 인사 재심)

임원 해임은 회장이 제안할 수 있으나 독자적으로 확정하지 못한다.

대상자에게 해임 사유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해충돌·정족수 문제 또는 심의 절차 위반이 있는 경우 독립 감사나 회원총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예산 운영과 지출)

운영지원금과 목적이 지정된 예산은 서로 구분하고, 학교의 공식 승인과 집행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일반 지출은 사업 적합성 확인자와 예산 검증자를 분리하며, 10만 원 이상 또는 미배정 지출은 운영위원회 추가 심의를 거친다.

도서 지원은 회장 또는 부회장이 적합성을 심사하고, 총무가 가용 예산과 증빙을 확인한다.

신청자는 자신의 신청에 대한 최종 결재자가 될 수 없으며 모든 집행 및 반려 이력은 기록한다.

제16조 (독립 감사와 정보 공개)

감사는 운영위원회 밖의 정회원 중 별도 선임 절차를 통해 선임하며, 임원 임명·집행과 관련된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규정 전문, 공개 가능한 의결 결과 및 개정 이력을 회원에게 제공하되 개인정보·징계 사유·비공개 제보 내용은 제한한다.

감사의 선임 방식과 임기는 회원총회에서 정한다.

제17조 (개정 제안·공고·기록)

정회원은 운영규정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만으로 개정안이 자동 채택되지는 않는다.

규정 개정은 정해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회원 권리에 중대한 변경을 주는 경우 회원총회 심의를 병행한다.

채택 이후에는 시행일, 개정 조항, 의결 결과 및 이전 판본을 공개적으로 보존한다.

제18조 (개인정보와 시스템 권한)

회원 개인정보는 담당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접근하고, 권한 변경·투표·지출 등 중요한 조치는 추적 가능한 기록을 남긴다.

홈페이지 표시 제한뿐 아니라 서버 측 역할 검증을 적용해야 하며, 홈페이지 운영 권한은 대학의 공식 승인·결재 권한과 구분된다.

제19조 (임기와 업무 인수인계)

운영진의 임기와 교체 절차는 회원총회 또는 별도의 인사 세칙에서 정한다.

임기 종료 시 문서, 예산 장부, 업무 기록 및 접근 권한을 안전하게 인수인계한다.

제20조 (시행 전 경과조치)

본 문서는 운영규정 제정 전 검토용 초안이며, 운영위원회 및 필요한 회원 절차를 거쳐 채택하기 전에는 정식 효력이 없다.

기존 홈페이지 권한 구조는 공동결재 기능이 구현·검증되기 전까지 별도로 존재할 수 있으며, 본 초안을 공개하는 것으로 자동 변경되지 않는다.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관련 학교 지침과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우선 확인한다.

※ 문의 및 의견 제안: G.L.O.W. 홈페이지 → 운영규정 → 개정 의견